

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11월 2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11월 2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09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12월15일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성광식)

□ 제안이유

-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(2001. 5. 15, 제1833호)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중에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으로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여하고 연 5%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
- 빠르게 변하는 금리변화에 적용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율을 적용하도록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자활공동체에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연 5%의 이율을 변동 없이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함(안 제9조제3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자활공동체에 기금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지출 되었는지요?	○ 약 8천4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.
○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공동체에만 지원되는 것인가요?	○ 자활공동체에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, 자활사업 육성을 위한 비용이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도 사용됩니다.
○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연체를 많이 하는지요?	○ 올해까지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거치기간으로 내년부터 상환하게 되므로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자활공동체사업은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고 5년 거치, 5년 균등 분할 상환되고 있는 자금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.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	204
	2003. 12. 23 (109)

: 2003. 11. 24

:

(2001. 5. 15, 1833)

7

5%

,

.

.

5%

(9 3)

9 3 “ 5 ” “
” , 5
3 1 1

()

()

.

<p>9 () · (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5</p> <hr/> <p>— ,</p> <p>15</p> <p>.</p> <p>()</p> <p><u>< ></u></p>	<p>9 () · ()</p> <p>-----</p> <hr/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</p> <p>()</p> <hr/> <p>3</p> <hr/> <p>1 1 _____.</p>
---	--